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2. 9.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발의일자 : 2010년 1월 26일
- 나. 발 의 자 : 신흥식 의원 외 7인
- 다. 회부일자 : 2010년 2월 1일
- 라. 상정일자 :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회의(2010. 2. 2)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 案 說 明 者 : 신흥식 의원)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5조)
-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규정함.(안 제8조)
- 센터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센터에 대하여 관제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專 門 委 員 :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임 등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이용대상, 센터의 사업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보칙으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센터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센터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내실있는 센터의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본 조례안 내용 중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정한 제8조는 원안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열되었으나, 각 호의 내용상 중복이 있고,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사업 내역을 명시할 경우 전액 구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여건상 부담이 있으며, 타 민간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항목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조 각 호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를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제8조 중 제1호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를 “센터 운영비” 로 하고
 제2호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와
 제3호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
 제4호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60 호
----------	--------------

발의년월일 : 2010. 2. 2.

발 의 자 : 송수희 의원 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 내용 중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정한 제8조는 원안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열되었으나, 각 호의 내용상 중복이 있고,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사업 내역을 명시할 경우 전액 구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여건상 부담이 있으며, 타 민간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항목을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조 각 호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를 반영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8조 중 제1호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를 “센터 운영비” 로 하고
제2호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와
제3호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
제4호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제1호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를 “센터 운영비” 로 하고
제2호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와
제3호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제4호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
에 따른 것으로 본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u>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u></p> <p>2. <u>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u></p> <p>3. <u>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u></p> <p>4. <u>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u></p> <p>5. <u>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u></p>	<p>제8조(사업비의 지원).....</p> <p>.....</p> <p>.....</p> <p>1. <u>센터 운영비</u></p> <p style="padding-left: 40px;">(삭 제)</p> <p style="padding-left: 40px;">(삭 제)</p> <p style="padding-left: 40px;">(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0
----------	-----

발의연월일 : 2010. 1. 26.
발 의 자 : 신흥식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5조)
- 나.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다.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규정함.(안 제8조)
- 라. 센터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제11조)
- 마.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 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아동복지법」 제4조, 제16조, 제19조
 - (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 (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나. 예산조치사항 : 있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4조(사업주체)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

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 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9조(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교육청 관계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7. 가정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센터 사업비·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심사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년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 칙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